

문서번호 : KARA-2019022

시행일자 : 2019. 01. 31

제 목 : 2019 KARA 상벌 및 분쟁조정위원회, 박정찬 회원 심의 결과의 건.

1. 우리 협회는 지난 1월 12-13일(토-일), 오피셜 친목모임 중 발생한 성추행 사건에 대한 상벌위원회를 개최하여 다음과 같이 심의 결과를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1) KARA 상벌 및 분쟁조정위원회

- ① 개최일 : 2019년 1월 25일(금) 오후 2시
- ② 장 소 : 대한자동차경주협회
- ③ 상벌 및 분쟁조정위원 : 김광진, 김덕호, 윤철수, 정선혁, 황태영
- ④ 심의 대상 : 박정찬 회원

2) KARA 상벌위원회 심의 안건

오피셜간 비공식 친목 모임 중 발생한 성추행 사건

3) 상벌 및 분쟁조정위원회 심의 결정

본 상벌위원회는 박정찬 회원에 대하여 2019년 1월 31일부터 보유하고 있는 대한자동차 경주협회의 모든 자격을 취소하고 영구히 제명한다.

4) 첨부 파일 :

- ① KARA 상벌 및 분쟁조정위원회 결정문
- ② 규정. 끝.

사단법인 대한자동차경주협회



대한자동차경주협회 상벌 및 분쟁조정위원회

결정

대상자 박정찬 (회원 라이선스 번호 OL004967)

주문

위 대상자에 대하여 2019년 1월 31일부터 보유하고 있는 사단법인 대한자동차경주협회의 모든 자격을 취소하고 영구히 제명한다.

이유

1. 대상자의 지위

대상자는 사단법인 대한자동차경주협회 2019 오피셜 A2 라이선스를 보유한 자이다.

2. 대상자의 행위

우리 위원회는 대상자의 자백과 피해자의 증언을 통하여 대상자가 2019년 1월 13일 오피셜간 비공식 친목 모임에서 여성 오피셜을 성추행 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3. 적용 기준

2019 대한자동차경주협회 자동차경기 국내규정 제1장 및 대한자동차경주협회 상벌 및 분쟁조정위원회 규정 제2장 및 제4장.

4. 판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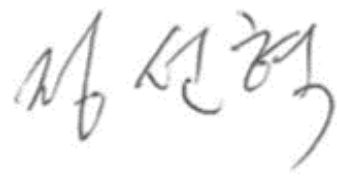
대상자는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오피셜의 명예를 훼손하고, 나아가 대한자동차경주협회 회원 전체의 명예에 악영향을 끼쳤다.


사건 당일 회동이 비공식적이며 사적인 자리였으나,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할 때 대상자에 대한 규정 내 가장 높은 수위의 징계가 필요한 것으로 결의하였다.


따라서 본 위원회는 유사 사건의 재발을 엄단하는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한다는 의지를 담아 이와 같이 결정한다.


2019년 1월 31일

사단법인 대한자동차경주협회

위원장 윤철수 (인) 

위원 정선혁 (인) 

위원 황태영 (인) 

위원 김덕호 (인) 

위원 김광진 (인) 

[첨부-2]

① 2019 자동차경기국내규정집 제1장 도덕헌장

제1조 승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결과에 승복한다.

제2조 경기 규칙을 준수하고 공정하게 경쟁한다.

제3조 개인의 존엄성과 다양성을 존중하여 성숙한 모터스포츠 문화를 이룩한다.

제4조 모터스포츠에 불건전한 행위를 삼가며, 모터스포츠인으로서 품위를 지킨다.
(선수, 오피셜, 팀 관계자 및 모터스포츠 관련업을 하는 모든 종사자는 남녀평등과 스포츠 정신을 위배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제5조 올바른 모터스포츠 문화의 정착을 위해 대한자동차경주협회와 국제자동차연맹이 진행하는 상벌 관련 사항과 회원간 분쟁 조정에 성실히 협조하고, 그 결정을 존중한다.

제6조 모터스포츠 전반의 안전에 최선을 다한다.

제7조 모터스포츠 발전과 권익을 위해 노력한다.

제8조 모터스포츠 가치를 훼손하는 비리와 부정, 차별과 폭력을 철저히 배격한다.

제9조 지속 가능한 개발을 구현하여 환경 보호에 앞장선다.

제10조 본 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사)대한자동차경주협회 상벌 및 분쟁조정위원회 규정 제 2장

2017. 10. 1. 개정

(사)대한자동차경주협회 상벌및분쟁조정위원회규정

제1장 총칙

제1조(근거 및 명칭) 대한자동차경주협회(이하 “본회” 라 한다) 정관 제3장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운영하며, 그 명칭은 상벌및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칭한다.

제2조(목적) 위원회는 본회에 등록된 회원단체 및 개인에 대한 표창과 비위에 대한 징계를 함에 있어서 적정, 공정성을 확보하고 본회 사무국에 의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제반 분쟁을 조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적용) 이 규정은 본회, 프로모터 및 그 단체에 속한 팀과 개인에게 적용한다.

제4조(기능) 위원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항을 검토 심의한다.

1. 각종 규정 위반 행위 심의 및 결정과 집행관련 사항
2. 기타 상벌에 관한 사항 심의 및 결정과 집행관련 사항
3. 항의 및 항소에 관련된 최종 심의 및 결정과 집행관련 사항
4. 협회 및 협회에 등록, 가맹된 프로모터, 팀, 선수(회원 및 회원단체)간 발생하는 제반 분쟁의 조정 및 유권 해석 관련 사항
5. 기타 위원회 목적과 모터스포츠 발전에 관련된 사항

제2장 위원회 소집 및 구성

제5조(소집) 위원회의 소집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협회 동기 이사 1인 이상이 제청할 수 있고, 3인 이상의 서면 동의를 얻어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6조(구성) 위원회는 다음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위원장 1인
2.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 7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의결이 필요한 사항으로 의결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을 포함한 3인 혹은 5인으로 구성하여 회의를 진행한다.
3.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으로 선출하고 본회 회장의 승인을 받아 임명한다.
4. 위원은 모터스포츠에 관한 경험 및 지식이 풍부한 자, 법률전문가(변호사), 학식과 덕망이 있고 공정한 판단을 할 수 있는 자 중 본회 회장이 위촉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임명한다.
5. 본회 회장은 위원이 질병, 실정법위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하거나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7조(위원의 직무)

1.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2.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정한 위원이 부위원장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위원은 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회에 출석하여 그 직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다.

제8조(임기)

1. 위원회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2. 보선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